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변경(안 제2조)

구 분	계	집행기관 정원	의회사무국 정원
현 재	729명	713명	16명
조 정	698명	683명	15명
증·감	감 31명	감 30명	감 1명

나. 한시정원인 직급별 정원 삭제(안 제3조의2)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 11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

침(2008. 5. 1)」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정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 정원조정의 기본방향은

구 전체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기관별,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아래 정원조정의 기준은 행정여건, 행정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한시인력을 정리한 것임

□ 실제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대로 총정원의 4.2%인 31명을 감축하였고(729명→698명)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13명→683명으로 30명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16명→15명으로 1명 감축하였음.

□ 이러한 정원 감축은

부산시 16개 구·군 평균 감축률 4.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우리 구는 성장가속 지역으로 현안업무가 많을 뿐 아니라 행정대상의 핵심요소인 인구도 대규모APT 입주 등으로 증가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번 정원감축으로 앞으로 인력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본 조례 개정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정원 감축에 따른 업무차질과 초과현원 관리에 따른 마찰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시행일은 그동안 심의보류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관계 법령
2. 부서별 정원조정(안)

2008. 9. 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허 용 택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항 (생략)

부서별 정원조정(안)

부 서 별	현 재	조정안	증·감	비 고
계	729명	698명	감31명	총정원의 4.2% 감축
기획감사실	29	27	감2	혁신분권담당 폐지
총 무 과	30	29	감1	
재 무 과	31	29	감2	복식부기담당 폐지
세 무 과	50	47	감3	
문화관광과	23	21	감2	문화재담당 폐지
민원여관과	26	24	감2	
주민생활지원과	25	24	감1	
주민서비스과	28	28		
지역경제과	34	32	감2	
환경위생과	32	30	감2	
청소행정과	26	24	감2	
건 설 과	38	36	감2	
재난안전과	15	14	감1	
교통행정과	28	26	감2	
건 축 과	22	22		
지 적 과	23	21	감2	
도시개발과	20	19	감1	
보 건 소	44	42	감2	
을숙도문화회관	20	19	감1	
의회사무국	16	15	감1	
동 주민센터	169	169	0	